# 대법원 2026. 10. 30. 선고 중요판결 요지

## 민 사

**2023다259347 총장임용후보자선출규정무효확인 (마) 상고기각**

**[비정년계열 교원인 원고들이 총장임용후보자 선출 과정에서 선거권을 배제당한 행위에 관하여 학교법인을 상대로 인격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한 사건]**

**◇1. 평등권 침해가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에 해당할 수 있는지(적극), 2. 사적 단체가 그 구성원을 차별적으로 처우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금지되는지(소극) 및 그러한 차별적 처우가 위법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3.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가 총장임용후보자 선출 절차를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는지(적극) 및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가 대학 구성원이 참여하는 총장임용후보자 선출 절차를 둔 경우, 그 선출에 정당한 이해관계를 가지는 대학 구성원에 대한 위법한 차별적 처우가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1. 헌법상 기본권은 개인의 자유로운 영역을 공권력의 침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방어적 권리이면서 동시에 헌법의 객관적 가치질서를 구체화한 것이기도 하다. 이러한 객관적 가치질서는 사법(私法)을 포함한 모든 법 영역에 영향을 미치므로, 사인 간의 법률관계인 사법관계 역시 헌법상 기본권 규정에 부합하도록 규율되어야 한다. 다만 기본권 규정은 그 성질상 사법관계에 직접 적용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법상 일반원칙을 규정한 민법 제2조, 제103조, 제750조, 제751조 등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사법관계에 효력을 미친다(대법원 2010. 4. 22. 선고 2008다38288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1. 1. 27. 선고 2009다19864 판결 등 참조).

2. 헌법 제11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 ·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 · 경제적 · 사회적 ·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여 평등의 원칙을 선언함과 동시에 모든 국민에게 평등권을 보장하고 있다. 사적 단체를 포함하여 사회공동체 내에서 개인이 불합리한 차별을 받지 않고 자신의 희망과 소양에 따라 다양한 사회적 · 경제적 활동을 영위하는 것은 인격권 실현의 본질적 부분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평등권 침해 역시 불법행위의 일반원칙을 정한 민법 제750조를 통하여 사법상 보호되는 인격적 법익 침해의 형태로 구체화되어 논하여질 수 있고, 그 위법성 인정을 위하여 반드시 사인 간의 평등권 보호에 관한 별개의 입법이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위 대법원 2009다19864 판결 등 참조).



3. 사적 단체는 사적 자치의 원칙 내지 결사의 자유에 따라 그 단체의 형성과 조직, 운영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사적 단체가 그 성격이나 목적에 비추어 그 구성원을 달리 취급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금지된다고 할 수는 없다. 그러나 사적 단체의 구성원에 대한 차별적 처우가 사회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법감정에 비추어 볼 때 용인될 수 있는 한계를 벗어난 경우에는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위법한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 이러한 한계를 벗어났는지는 사적 단체의 성격이나 목적, 차별적 처우의 필요성, 차별적 처우에 의한 법익 침해의 양상 및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위 대법원 2009다19864 판결, 대법원 2026. 6. 25. 선고 2025다219664 판결 등 참조).

4. 헌법 제31조 제4항은 “교육의 자주성 · 전문성 · 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라고 규정하여 대학의 자율성을 헌법상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다. 사립학교법은 제53조 제1항에서 “각급 학교의 장은 해당 학교를 설치 · 경영하는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가 임용한다.”라고 규정하여 사립대학 총장임용권이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이하 ‘학교법인 등’이라 한다)에 있음을 밝히고 있을 뿐, 그 총장임용후보자 선출 절차에 관하여는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사립대학 총장임용후보자 선출에 대학 구성원이 참여하는 절차를 둘 것인지, 이를 둔다면 어떤 방식으로 참여하게 할 것인지는 학교법인 등이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 그러나 학교법인 등이 대학 구성원이 참여하는 총장임용후보자 선출 절차를 둔 이상, 그 절차에서 총장임용후보자 선출에 정당한 이해관계를 가지는 대학 구성원에 대한 위법한 차별적 처우가 행해져서는 아니 된다.

☞ 원고들은 이 사건 대학에 근무하는 전임교원 중 조교수 또는 부교수로 근무하는 비정년계열 교원으로서 강의전담교원 또는 교육중점교원이고, 피고는 이 사건 대학을 경영하는 학교법인임. 원고들은 2020. 8.경부터 이 사건 대학의 총장임용후보자 선출에 관하여 비정년계열 전임교원을 포함한 모든 전임교원에게 선거권을 부여할 것을 요구하여 왔고, 국가인권위원회는 2021. 12. 23. 이 사건 대학의 총장임용후보자 추천 과정에서 비정년계열 교원의 참여가 합리적 이유 없이 배제되고 있다는 이유로 피고에게 관련 규정을 정비할 것을 권고하였음. 그러나 피고의 이사회는 원고들과 같은 강의전담교원과 교육중점교원을 선거권자에서 제외하는 이 사건 대학 총장임용후보자 선출규정을 제정하여, 위 규정에 따라 원고들의 참여를 배제한 채 선거를 실시하였음. 이 사건은 원고들이 위와 같은 피고 학교법인의 불법행위로 인한 정신적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임

☞ 원심은, 강의전담교원 또는 교육중점교원인 원고들은 정년계열 전임교원이나 비정년계열 비정년 전임교원과 본질적으로 동일한 비교집단에 속한다고 할 것인데, 총장임용후

보자 선출에서 원고들의 선거권을 원천적으로 배제한 데에는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고, 이러한 차별적 처우는 헌법 제11조에서 정한 평등의 원칙 등 전체 법질서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위법한 행위로서 불법행위에 해당하며, 원고들은 이로 인하여 인격권 침해에 따른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음

☞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비정년계열 전임교원인 원고들은 정년계열 전임교원이나 비정년계열 비정년 전임교원과 본질적으로 동일한 비교집단에 속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 사건 대학의 총장임용후보자 선출 과정에서 원고들의 선거권을 원천적으로 배제한 것이 위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민법 제750조에 따른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원심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함

**2023다278836 사용료 (나) 파기환송**

**[유선방송사업자인 원고가 제3자의 기망행위로 무효인 서비스 제공계약을 체결하고 실제로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범위가 문제된 사건]**

**◇1. 불법행위로 인한 재산상 손해의 의미 및 사기로 인하여 재산을 편취당하는 손해를 입었을 경우의 손해액(= 불법행위 당시 재산의 시가), 2.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지우기 위한 요건으로서 위법한 행위와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 판단하는 방법◇**

불법행위로 인한 재산상 손해는 위법한 가해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재산상 불이익, 즉 위법행위가 없었더라면 존재하였을 재산상태와 위법행위가 가해진 시점의 재산상태의 차이를 의미하고(대법원 1992. 6. 23. 선고 91다33070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26. 8. 13. 선고 2024다208865 판결 등 참조), 사기로 인하여 재산을 편취당하는 손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불법행위 당시 재산의 시가가 손해액이 된다(대법원 2023. 8. 18. 선고 2018다259275 판결 참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지우려면 그 위법한 행위와 원고가 입은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결과 발생의 개연성, 위법행위의 태양 및 피침해이익의 성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5. 11. 선고 2004다11162 판결, 대법원 2023. 4. 27. 선고 2021다262905 판결 등 참조).

☞ 원고는 이 사건 집합건물의 관리단을 대표할 자격이 없는 피고 1의 기망으로 종합유선방송 및 인터넷전용회선 서비스(이하 '이 사건 서비스')를 제공하고 매월 이에 대한 사용료를 지급받기로 하는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후, 이 사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170,489,000원 상당의 장비설치비용을 지출하였음. 이후 원고는 약 2년 8개월가량 서비스를 제공하였으나, 서비스 사용료 474,574,990원 중 176,990,615원만 지급받았고, 나머지 297,584,375원은 지급받지 못하였음. 이에 원고는 피고 1 및 피고 1을 이 사건 건물의 관리소장으로 임명한 피고 2를 상대로 미납된 서비스 사용료 297,584,375원 및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위약금 101,117,746원, 합계 398,702,121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한 사안임

☞ 원심은, 피고 1은 이 사건 관리단을 대표하여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없었는데도 그러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원고를 기망하여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고, 피고 1을 고용한 피고 2는 사용자책임을 부담한다고 하면서도, 원고가 입은 손해는 이 사건 장비설치비용 170,489,000원이고, 원고가 손해라고 주장하는 미납 서비스 사용료 297,584,375원 및 위약금 101,117,746원은 피고 1의 불법행위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아 손해배상의 대상이 되지 않으며,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들의 책임을 각 60%로 제한한 손해배상액에서 원고가 이 사건 관리단으로부터 이미 지급받은 서비스 사용료 176,990,615원 등을 손익상계로 공제하면 피고들이 원고에게 지급할 손해배상액은 없다고 판단하였음

☞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피고 1의 위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편취당한 것은 이 사건 계약으로 인해 원고가 실제로 제공한 이 사건 서비스이고, 이 사건 서비스가 가지는 특성, 이 사건 계약기간 및 원고가 이 사건 서비스를 실제로 제공한 기간의 장단, 이 사건 장비 설치비용 및 서비스 사용료의 액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고가 입은 손해액은 원고가 제공한 위 서비스 자체의 시가 상당액이 된다고 보아야 하며, 이는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사용료가 과다 책정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서비스 사용료에 상응한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환송함

**2025다213593 임시총회결의 무효확인 청구 (마) 상고기각**

**[비법인사단의 임원에서 해임된 원고들이 임원의 선임 또는 해임 결의가 일괄 결의 방식으로 이루어져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총회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사건]**

**◇1. 비법인사단의 기관을 구성하는 방식 및 여러 임원의 선임 또는 해임을 하나의 의안으로 상정하고 일괄 표결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이른바 '일괄 결의' 방식이 허용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2. 일괄 결의 방식에 의하여 이루어진 총회결의가 무효가 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비법인사단의 기관은 비법인사단의 구성원인 사원들의 자발적 의사에 기초를 두는 민주적 구성원리에 부합하는 방식, 즉 사원들의 자유로운 의사를 정확하게 반영하는 방식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비법인사단의 기관인 임원의 선임 또는 해임은 개별 임원의 개인적 특질을 고려하여 그 개별 임원에 관한 단체적 의사결정에 기하여 이루어진다. 여러 임원의 선임 또는 해임에 관한 각각의 단체적 의사결정이 함께 이루어지는 경우에도 사원들은 개별 임원에 관하여 찬반을 결정하고 그 의사를 표시할 자유를 가진다.

이에 비추어 보면, 여러 임원의 선임 또는 해임을 하나의 의안으로 상정하고 일괄 표결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결의(이하 '일괄 결의'라 한다)에는 개별 임원의 선임 또는 해임에 대한 사원들의 자유로운 의사를 정확하게 반영하기 어렵다는 절차적 문제가 있고, 이로 인해 사원들의 의사결정 및 표시의 자유가 침해될 수 있다. 따라서 비법인사단의 총회에서 여러 임원을 선임 또는 해임하는 결의를 할 때에는 임원별로 표결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원들이 개별 임원의 선임 또는 해임에 대하여 찬반을 결정하고 표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법령이나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거나, 위 일괄 결의 방식을 채택하는 총회의 결의가 있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괄 결의 방식에는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한편 이러한 하자로 인하여 총회의 일괄 결의가 무효가 되는지는 일괄 결의에 이르게 된 경위와 일괄 결의의 필요성, 일괄 결의의 사전 공지 여부 및 일괄 결의 당시 사원들의 이의 제기 여부, 일괄 결의에 따른 표결 결과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일괄 결의 방식이 결의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는지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 비법인사단인 피고는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당시 조합장, 총무이사 등 임원으로 재직하고 있던 총 7명(원고들 포함)을 일괄하여 해임하고, 임원 후보자 9명을 일괄하여 후임 임원으로 선임하였음. 임시총회결의 당시 조합원은 위 각 안건에 대한 각 찬반만을 표시할 수 있었을 뿐 개별 임원의 선임 또는 해임에 대하여는 찬반을 표시할 수 없었음. 원고들은 위와 같은 일괄 결의 방식으로 인해 조합원들의 결의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임시총회 결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음

☞ 원심은, 피고의 정관 등에서 여러 임원의 선임 또는 해임을 하나의 의안으로 일괄하여 상정하는 것을 금지 또는 제한하고 있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일괄 결의 방식에 의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임시총회 결의의 효력을 인정하였음

☞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일괄 결의 방식에 의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임시총회 결의에는 하자가 있으므로 원심이 이 사건 임시총회 결의의 효력을 곧바로 인정한 것은 잘못이라고 보면서도, ① 이 사건 임시총회 결의에 이르기까지의 경과에 비추



어 볼 때, 결의 당시 이미 기존 임원진의 해임과 신임 임원진의 선임에 대한 각 일괄 결의가 어느 정도 예상되어 있었고 일괄 결의의 필요성도 인정될 여지가 있었던 점, ② 임시총회 소집통지서에는 일괄 결의 방식으로 결의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점과 기존 임원진의 공통된 해임사유 및 피고 정관 위반 사항이 기재되어 있었던 점, ③ 소집통지 이후 일괄 결의 방식에 대하여 이의하였다는 사정은 없고, 임시총회 결의 당시에도 일괄 결의 방식에 대하여는 전혀 이의가 없었던 점, ④ 이 사건 임시총회 결의에서 피고 정관상 의결정족수를 크게 상회하여 찬성이 이루어진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임시총회 결의 당시 피고 조합원들이 개별 임원의 선임 또는 해임에 대하여 찬반을 표시할 수 있도록 하였더라도 그 결의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로 원심의 결론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함

**2025다218244(본소), 2025다218245(반소) 채무부존재확인(본소), 공사대금 등(반소) (사) 파기환송**

**[회생채권자에 해당하는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에 관하여 추심명령이 있는 경우 채무자가 피압류채권에 관한 회생채권확정의 소를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하는지 문제된 사건]**

**◇회생채권자에 해당하는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에 관하여 추심명령이 있는 경우 채무자가 피압류채권에 관한 회생채권확정의 소를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하는지 여부(소극)◇**

회생채권자에 해당하는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에 관하여 추심명령이 있더라도 채무자가 피압류채권에 관한 회생채권확정의 소를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하지 않는다(대법원 2025. 10. 23. 선고 2021다252977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회생절차가 개시된 후 회생채권자가 회생채권의 이의자를 상대로 회생채권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는 것은 부적법하고(대법원 2017. 6. 29. 선고 2016다221887 판결 등 참조), 회생절차개시 당시에 이미 회생채권에 관한 소송이 계속 중이면 채무자회생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그 소송을 수계하는 방법으로 회생채권의 존부와 범위를 다툴 수 있을 뿐이다(채무자회생법 제172조 제1항). 이처럼 회생채권확정의 소는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그 특성을 고려하여 간이하고 신속하게 채권의 존부 및 범위를 확정할 수 있도록 회생절차 안에서 이행의 소에 갈음하여 마련된 절차이다.

2. 회생절차에 관하여 채무자회생법에 규정이 없는 때에는 민사소송법 및 민사집행법을

준용한다(채무자회생법 제33조).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금전채권에 관하여 민사집행법에 의한 압류명령이 있으면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 대한 지급이 금지되고 채무자는 채권의 처분과 영수가 금지되지만(민사집행법 제227조 제1항), 이는 채무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현실로 급부를 추심하는 것만을 금지할 뿐이므로 채무자는 제3채무자를 상대로 회생채권확정의 소를 제기할 수 있고 법원은 압류명령을 이유로 이를 배척할 수 없다. 나아가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금전채권에 관하여 추심명령이 있더라도 추심채권자에게 대위절차 없이 압류채권을 추심할 권능만이 부여되는 것이고(민사집행법 제229조 제2항),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게 가지는 채권이 추심채권자에게 이전되거나 귀속되는 것은 아니므로(대법원 2019. 7. 25. 선고 2019다212945 판결 등 참조), 추심명령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채무자가 회생채권확정의 소를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한다고 볼 법률적 근거가 없다.

3. 추심채권자는 채무자가 피압류채권에 관하여 제기한 회생채권확정의 절차에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민사소송법 제83조에 따라 공동소송참가를 하거나 상고심까지 같은 법 제78조에 따라 공동소송적 보조참가를 할 수 있고, 민사집행법 제237조 제1항에 따른 제3채무자의 진술의무 제도를 활용하여 회생채권확정의 소 제기 여부를 확인할 수도 있다. 한편 채무자가 피압류채권에 관한 회생채권확정의 소에서 승소확정판결을 받아 이에 따른 변제를 요구하더라도, 제3채무자는 회생계획에 피압류채권에 관한 변제 방법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거나 또는 민사집행법 제248조에 따라 공탁함으로써 지급의무를 면할 수 있다.

따라서 채무자가 피압류채권에 관한 회생채권확정의 소를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하지 않는다고 보더라도 추심채권자 또는 제3채무자에게 부당한 결과가 생긴다고 보기 어렵다.

4. 채무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피압류채권에 관하여 이행의 소를 제기한 다음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어도 채무자는 당사자적격을 상실하지 아니하므로(위 대법원 2021다252977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채무자와 제3채무자 사이에서 소송은 계속된다. 그러던 중에 제3채무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되면 채무자와 제3채무자 사이에 계속 되던 이행의 소가 회생채권의 존부와 범위를 다투는 회생채권확정의 소로 변경되어야 하는데, 이때 채무자가 당사자적격을 상실하였다고 보아 그 소를 각하한다면 그동안의 소송이 모두 무위로 돌아가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하게 된다. 회생절차가 회생계획 인가결정 없이 폐지되면 이와 같이 계속 중이던 회생채권확정의 소가 다시 이행의 소로 변경되어야 할 것이라는 점에 비추어 보면 더욱 그러하다.



☞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의 금전채권자는 원고에 대한 회생절차가 개시되자,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가지는 회생절차의 채권자로서 회생변제계획안에 따라 원고로부터 받을 회생채권 일부'를 피압류채권으로 하는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음. 피고는 위 회생절차 개시로 법률상 관리인으로 간주된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를 상대로 반소로써 위 압류 및 추심명령의 대상이 된 채권 부분을 포함하여 회생채권의 확정을 청구한 사안임

☞ 원심은, 제3채무자에 대한 회생채권확정의 소는 추심채권자만 제기할 수 있고 추심채무자는 회생채권확정의 소를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한다는 법리(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5다243156 판결)에 따라, 반소 중 위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는 채권에 관하여 회생채권확정을 구하는 부분은 추심채무자인 피고에게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판단하였음

☞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피고가 반소 중 회생채권확정을 구하는 채권 부분에 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그 채권에 관하여 회생채권확정의 소를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하지 않는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환송함

**2025다219022 부당이득금 (나) 상고기각**

**[분양가심사위원회가 분양가격을 구성하는 일부 항목을 과다하게 인정하고, 다른 일부 항목은 임의적·일률적으로 감액한 경우 분양가상한제 위반에 따른 사업주체의 부당이득 성립 범위가 문제된 사건]**

**◇1. 구 주택법(2016. 1. 19. 법률 제13805호로 전부 개정되어 2016. 8. 12.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주택법') 제38조의2에서 정한 분양가 상한제의 제도적 취지에 비추어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의 분양가격 산정기준에 관한 구 주택법 등 관계 법령이 강행규정에 해당하는지(적극) 및 구 주택법 제38조의2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정당한 분양가 상한금액'을 초과한 분양가격으로 분양계약이 체결되었다면 그 분양계약은 위 산정기준에 따른 정당한 금액을 초과하는 범위에서 무효인지(적극), 2. 공동주택의 실제 분양가격을 구성하는 택지비 또는 건축비의 항목별 금액이 구 주택법 제38조의2에 따라 산정된 분양가 상한금액을 구성하는 택지비 또는 건축비의 항목별 금액을 초과하였더라도 사업주체가 구 주택법 제38조의2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되는 분양가 상한금액 이하로 실제 분양가격을 정하여 공동주택을 공급하였다면 분양가상한제를 준수한 것인지(적극) 및 분양가 상한금액을 구성하는 택지비 또는 건축비의 항목별 금액이 과다 산정되었거나 과소 산정된 경우 정당한 분양가 상한금액의 산정 방법, 3. 분양가심사위원회가 분양가격**

**을 구성하는 일부 항목들의 비용을 임의적·일률적으로 감액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1. 구 주택법 제38조의2에서 정한 분양가 상한제는 사업주체가 일반인에게 공급하는 공동주택의 분양가격의 상한을 제한함으로써 부동산 투기를 예방하고 중산·서민층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여 주택시장의 안정을 도모하려는 제도이다. 구 주택법 제38조의2 제3항, 제4항에서 분양가 상한금액의 구성 항목을 택지비 및 건축비로 나누고 그 구체적인 세부 내역의 산정 기준을 국토교통부 장관이 고시하거나 국토교통부령 등에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공동주택 건설에 필요한 각종 비용을 합리적으로 계산하는 기준을 관계 법령에서 정하도록 하여 이를 바탕으로 종국적으로 분양가 상한금액을 적정하게 결정되도록 하는 데 그 제도적 취지가 있다. 따라서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의 분양가격 산정기준에 관한 구 주택법 등 관계 법령은 강행규정에 해당하고, 구 주택법 제38조의2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산정되는 분양가격, 즉 '정당한 분양가 상한금액'을 초과한 분양가격으로 분양계약이 체결되었다면 그 분양계약은 위 산정기준에 따른 정당한 금액을 초과하는 범위에서 무효가 된다.

2. '정당한 분양가 상한금액'의 초과 여부를 판단할 때, 공동주택의 실제 분양가격을 구성하는 택지비 또는 건축비의 항목별 금액이 구 주택법 제38조의2에 따라 산정된 분양가 상한금액을 구성하는 택지비 또는 건축비의 항목별 금액을 초과하였더라도, 사업주체가 구 주택법 제38조의2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되는 분양가 상한금액 이하로 실제 분양가격을 정하여 공동주택을 공급하였다면 구 주택법 제38조의2에 따른 분양가상한제를 준수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대법원 2013. 7. 25. 선고 2011다38875, 38882 판결 참조). 따라서 분양가 상한금액을 구성하는 택지비 또는 건축비의 항목별 금액이 과다 산정되었거나 과소 산정되었다면, 과다 산정액을 공제하거나 과소 산정액을 추가하여 정당한 분양가 상한금액을 산정한 후, 이를 실제 분양가격과 비교하여 그 초과액만큼 부당이득이 성립한다고 보아야 한다.

3. 한편, 구 주택법 제38조의2의 위임을 받아 택지비 및 건축비의 가산비용 산정방식을 규정하는 구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2016. 8. 12. 국토교통부령 제3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 제1호, 제14조 제2항, [별표 1의3] 제4호, 제5호에서는 택지비 가산비용, 건축비 가산비용 중 인텔리전트설비 비용과 사업승인조건 충족 비용에 관하여 '소요되는 비용' 자체를 가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이를 임의로 조정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이는 위 규칙 [별표 1의3] 제2호에서 테라스 설치 비용에 관하여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금액으로 한정한다.'는 규정



을 두고 있는 것과 대조된다. 또한 국토교통부 고시인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시행지침」 제7조 제3항에서도 '분양가심사위원회는 분양가격 산정의 적정성을 심사할 때 법령에 따라 인정되는 분양가격의 구성 항목별 비용이 과다 또는 축소 계상되지 않도록 철저히 심사하여 합리적인 비용이 분양가격에 반영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관련 규정들의 내용 및 취지에 비추어 보면, 분양가격을 구성하는 항목인 택지비 가산비용, 건축비 가산비용 중 인텔리전트설비 비용과 사업승인조건 충족 비용의 적정성을 심사하는 분양가심사위원회가 사업주체가 신청한 비용의 적정성이나 그를 뒷받침하는 자료 등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나 실질적인 심사 없이, 그와는 전혀 무관한 요소인 주변의 유사한 주택의 시세 등을 고려하여 미리 정해둔 분양가 상한금액에 맞추기 위하여 해당 비용을 임의적·일률적으로 감액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 분양가심사위원회가 분양가 심사과정에서 사업주체가 신청한 '구조형식에 따른 가산비용'은 그대로 인정하면서, 다른 가산비용 중 1개 항목을 74.84%, 7개 항목을 일률적으로 35.68% 감액하여 분양가 상한금액을 의결하자, 수분양자인 원고들은 구조형식에 따른 가산비용이 잘못 인정되어 분양가 상한금액이 과다 산정되었으므로, 정당한 분양가 상한금액을 초과한 분양가격으로 체결된 분양계약이 분양가상한제 위반으로 일부 무효라고 주장하며 사업주체인 피고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다른 항목의 비용에 관한 분양가심사위원회의 임의적·일률적 감액이 부당하므로 그로 인하여 분양가 상한금액이 과소 산정된 부분도 정당한 분양가 상한금액 산정에 반영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사안임

☞ 원심은, 분양가심사위원회가 구조형식 가산대상이 아닌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하여 구조형식 가산비용을 인정함으로써 분양가격을 그만큼 과다 산정하였고, 그로 인하여 실제 분양가격이 정당한 분양가 상한금액을 초과하게 되는 범위에서 분양계약이 무효가 되므로 피고가 이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후, 반면 분양가심사위원회가 다른 일부 항목들의 비용을 임의적·일률적으로 감액한 것이 부당하므로 부당한 감액으로 인하여 과소 산정된 금액은 무효 범위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보았음

☞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분양가격을 구성하는 항목별 금액이 과다 산정되거나 과소 산정되었다고 하여 개별적으로 분양가 상한제 위반이 된다거나 부당이득반환의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를 합산한 분양가격 총액이 정당한 분양가 상한금액 총액을 초과할 때에만 분양가 상한제를 위반한 것이 되어 그 초과 부분이 무효가 되는 것임에도, 원심이 과다 산정된 항목의 금액만을 놓고 개별적으로 분양가 상한제를 위반하였다고 보아 그 범위에서 곧바로 분양계약이 무효가 되어 부당이득이 성립한다고 판단

한 것은 잘못이나, 원심이 분양가심사위원회의 임의적·일률적 감액이 부당하다고 본 판단은 정당하고, 그로 인한 과소 산정 금액을 무효 범위에서 공제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과다·과소 산정된 항목별 금액들을 모두 반영한 정당한 분양가 상한금액 총액을 실제 분양가격 총액이 초과한 범위에서 부당이득 성립을 인정한 원심의 결론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함

**2025다220538 구상금 (마) 파기환송**

**[공동불법행위자의 공제사업자가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게 구상할 때 부담부분 초과 배상 여부의 판단 기준이 문제된 사건]**

**◇공동불법행위로 말미암아 신체의 상해를 입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 또는 그의 보험자나 공제사업자가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경우 공동불법행위자들이 피해자에게 배상하여야 하는 총 손해액을 기준으로 공동불법행위자의 부담부분과 변제액을 산정하여 부담부분 초과 배상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공동불법행위자는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부진정연대채무를 지되, 공동불법행위자들 내부관계에서는 일정한 부담부분이 있다.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이 자기의 부담부분 이상을 변제하여 공동의 면책을 얻게 하였을 때에는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게 그 부담부분의 비율에 따라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공동불법행위자가 구상권을 갖기 위해서는 반드시 피해자의 손해 전부를 배상하여야 할 필요는 없으나 자기의 부담부분을 초과하여 배상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2. 9. 선고 2005다28426 판결 등 참조). 이는 공동불법행위자 중의 1인과 체결한 보험계약이나 공제계약에 따라 보험자나 공제사업자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을 보험금액 등으로 지급함으로써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1993. 1. 26. 선고 92다4871 판결 등 참조).

한편, 공동불법행위로 말미암아 신체의 상해를 입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 또는 그의 보험자나 공제사업자가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경우 적극적 재산상 손해, 소극적 재산상 손해 및 정신적 손해(위자료)의 각 항목별로 공동불법행위자의 부담부분과 변제액을 각기 산정하여 부담부분 초과 배상 여부를 판단할 것이 아니라, 공동불법행위자들이 피해자에게 배상하여야 하는 총 손해액을 기준으로 공동불법행위자의 부담부분과 변제액을 산정하여 부담부분 초과 배상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 이 사건 차량에 적재되어 있던 화물의 하역 작업을 하던 소외인과 피고의 과실이 경



합하여 피고의 근로자인 피해자가 상해를 입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음. 근로복지공단은 피고와 체결한 산업재해보상보험계약에 따라 재해근로자인 피해자에게 보험급여를 지급하고, 이 사건 차량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인 원고 등을 상대로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음. 위 사건에서 원고 등이 근로복지공단에 피해자의 과실비율을 30%, 공동불법행위자인 소외인과 피고의 내부관계에서 피고의 부담비율을 20%로 인정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고, 원고는 근로복지공단에 위 화해권고결정에 따른 금원을 지급하였음

☞ 이후 피해자는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사고에 따른 손해의 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음(이하 '관련 손해배상사건'). 위 사건에서 피해자의 과실비율을 30%로 인정하여, 원고가 피해자에게 적극적·소극적 재산상 손해액 및 정신적 손해액을, 피해자에게 국민연금법에 따른 급여를 지급하고 승계참가를 한 국민연금공단에 국민연금공단이 대위 취득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손해 상당액을 각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음. 원고는 위 판결에 따라 피해자와 국민연금공단에 관련 손해배상사건의 판결에 따른 금원을 지급한 다음, 소외인의 부담부분 이상을 변제하여 공동불법행위자인 피고가 공동의 면책을 얻게 하였다고 주장하며 피고의 부담부분에 관한 구상금을 청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음

☞ 원심은, 피해자의 손해를 재산상 손해 부분과 위자료 부분으로 나누어 원고의 부담부분과 변제액을 각각 산정하였음. 원고가 지급한 재산상 손해 변제액이 재산상 손해에 관한 원고의 부담부분을 초과하지 않으므로 재산상 손해에 관하여는 피고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지만, 관련 손해배상사건의 판결에 따라 원고가 피해자에게 위자료 및 지연손해금 전액을 지급하였으므로 위자료 관련 공동면책액 중 피고의 내부적 부담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등은 구상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음

☞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인 소외인과 체결한 공제계약에 따라 공제금으로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근로복지공단에 구상금을 지급한 원고가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인 피고를 상대로 공동불법행위자의 내부적 부담비율에 따른 구상금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피해자가 배상받아야 하는 총 손해액 중 원고의 부담부분을 초과하여 변제함으로써 피고가 공동의 면책을 얻게 하였어야 하므로, 이때 피해자가 배상받아야 하는 총 손해액은 적극적 재산상 손해, 소극적 재산상 손해 및 정신적 손해를 모두 포함하고, 원고의 부담부분과 변제액은 이러한 총 손해액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환송함

**2026다200913 소유권이전등기 (사) 파기환송**

**[공공임대주택에 이미 입주한 임차인이 다른 주택의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 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의 주택 소유 간주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1. 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2018. 12. 11. 국토교통부령 제565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개정 규칙') 부칙 제3조에 따른 제53조 개정규정의 적용범위, 2. 개정 규칙 부칙 제4조의 무주택세대구성원 유지 의무에 관한 적용례에 따른 제53조 개정규정의 적용범위 및 개정 규칙 시행 전에 이미 입주를 마친 임차인으로서 다른 주택의 분양권을 갖고 있는 경우 개정 규칙 부칙 제4조가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1.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 및 제48조 제1항에 따르면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입주자의 자격과 입주자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고, 이에 따라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 제1항은 "공공주택의 입주자 자격, 입주자 선정방법 및 입주자 관리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되,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개정 규칙 제53조 본문에 '분양권 등을 갖고 있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는 내용이 추가되었고, 개정 규칙 부칙 제3조에서 "제53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입주자모집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분양권 등부터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규정은 개정 규칙 시행 이후 입주자모집승인을 신청하는 공공임대주택부터 적용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대법원 2025. 9. 11. 선고 2024다284418 판결, 대법원 2025. 9. 11. 선고 2025다205757 판결 등 참조).

2. 한편, 개정 규칙 부칙 제4조는 '국민주택 등의 공급대상의 무주택세대구성원 유지 의무에 관한 적용례'라는 표제 아래 "제53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에 입주자모집공고의 승인을 신청한 주택의 공급대상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개정 규칙 부칙 제4조 표제의 '무주택세대구성원 유지 의무'란 국민주택 등의 공급대상이 개정 규칙 제4조 제2항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일 등부터 입주할 때까지 부담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유지 의무를 의미하므로, 개정 규칙 부칙 제4조는 개정 규칙 시행 이전에 입주자모집공고의 승인을 신청한 국민주택 등(국민주택에 해당하는 공공임대주택 포함)에 입주자로 선정되었으나 개정 규칙 시행 당시 아직 입주를 마치지 못하여 입주 때까지 무주택유지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만 적용된다고 보아야 하므로, 개정 규칙 시행 이전에 이미 입주를 마친 임차인에게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인인 원고가 「공공주택 특별법」 등에 근거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조기분양전환 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다른 아파트의 분양권을 취득한 원고에게는 개정 규칙 부칙 제4조에 따라 분양권을 갖고 있는 경우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간주하는 개정 규칙 제53조가 적용된다는 이유로 분양전환 부적격 통보를 하였음. 이에 원고가 개정 규칙 부칙 제3조에 따라 개정 규칙 제53조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원고로부터 매매잔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매매(분양전환)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사안임

☞ 원심은, 개정 규칙 시행 후 입주자모집승인을 신청한 공급대상 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만 개정 규칙 부칙 제3조가 적용되는 것이고, 무주택 의무를 유지하여야 하는 국민주택 등 공급대상자에 대하여는 개정 규칙 부칙 제4조가 적용되어야 하므로,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모집승인 신청일이 개정 규칙 시행일 이전이라고 하더라도 개정 규칙 제53조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이미 입주자로 선정된 이후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전환을 신청한 원고에 대하여도 개정 규칙 부칙 제4조에 따라 분양권을 갖고 있는 경우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간주하는 개정 규칙 제53조 본문이 적용되어, 결국 원고는 무주택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분양전환신청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음

☞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원고는 2015. 8. 5.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개정 규칙 시행일인 2018. 12. 18. 이전에 이미 이 사건 아파트에 입주를 완료한 후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2 제1항 등에 따라 분양전환을 신청하였고, 개정 규칙 제4조 제2항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일 등부터 입주할 때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 유지 의무를 부담하는 국민주택 등의 공급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개정 규칙 제4조 제2항의 적용을 전제로 한 개정 규칙 부칙 제4조는 원고에게 적용될 수 없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환송함

**2026다204448 부당이득금 등 청구 (마) 파기환송**

**[허위 하도급계약에 따라 지급받은 공사대금의 부당이득반환의무 성립과 범위가 문제된 사건]**

**◇1. 계약상 채무의 이행 명목으로 급부하였으나 계약이 실제로 체결되지 않은 경우 급부부당이득의 성립 여부(원칙적 적극), 2. 급부부당이득에서 민법 제741조의 '이익' 및 '그로 인한 손해'의 의미, 3. 급부를 받은 사람이 별개의 원인으로 제3자에게 지급한 돈을 부당이득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급부부당이득에 '실질적 이익 법리'가 적용되는 경우의 범위◇**

1. 계약상 채무의 이행으로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급부를 행하였는데 그 계약이 무

효이거나 애당초 체결되지 아니하는 등으로 급부의 법률상 원인이 없는 경우(급부부당이득)에는, 소유권 등 배타적 권리에 기한 이익이 정당한 권원 없이 타인에게 귀속된 경우(침해부당이득)와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계약상 급부 자체가 곧 민법 제741조가 정한 '이익' 및 '그로 인한 손해'가 되어 급부의 실행이라는 하나의 사실로 그 요건이 충족되고, 상대방이 얻은 이익의 구체적 내용을 따져 실질적으로 이득을 얻었는지를 별도로 심사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9다98706 판결, 대법원 2017. 6. 29. 선고 2017다213838 판결 등 참조).

2. 대법원은 부당이득반환에서 이득은 실질적인 이익을 의미한다고 보면서(대법원 1979. 3. 13. 선고 78다2500, 2501 판결, 대법원 2025. 6. 26. 선고 2025다209973 판결 등 참조), 공평·정의의 이념에 부합하는 결론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급부부당이득 사안에도 실질적 이익 법리를 적용하여 왔다. 하지만 이는 반환청구의 상대방이 문제된 자금을 형식적으로 수령하였을 뿐 이를 자신의 것으로 보유·사용하지 아니하고 그 자금이 귀속되어야 할 제3자에게 곧바로 또는 그대로 이전함으로써 그 자금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처분권 내지 이와 관련된 이익을 취득하지 못하여 그 상대방이 급부수령자라고 평가하기 어려운 특수한 경우에 한하여 이루어져 온 것이다. 예컨대 ① 반환청구의 상대방이 편취 금원이나 착오로 송금된 돈을 송금인 등의 지시에 따라 곧바로 인출하여 재송금·전달하는 등으로 이를 사실상 지배·처분하지 못한 경우(대법원 2011. 9. 8. 선고 2010다37325 판결, 대법원 2015. 6. 24. 선고 2014다231507 판결 등 참조), ② 질권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자기 채권액을 초과하여 지급받은 돈을 그대로 질권설정자에게 반환한 경우(대법원 2015. 5. 29. 선고 2012다92258 판결 등 참조)가 그러하다.

☞ 원고가, 소속 직원이 피고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허위 서류를 만들어 원고 전산에 등록하고, 이를 통해 피고에게 존재하지 않는 부대공사의 공사대금 명목으로 합계 310,750,000원을 지급하게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공동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과 부당이득반환을 선택적으로 청구한 사안임

☞ 원심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 계약관계가 존재하는 이상 피고가 공사를 진행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법률상 원인이 없다고 할 수 없어 부당이득반환의무가 성립하지 않고, 설령 그 의무가 성립한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위 직원에게 영업비 명목으로 먼저 지급한 232,440,000원을 공제하면 피고가 얻은 실질적 이익은 78,310,000원에 불과하다고 판단하였음. 한편 피고가 위 직원의 불법행위를 과실로 방조하였다고 보아, 원고의 전체 손해액 중 60%에 대한 공동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하였음

☞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원고와 피고 사이의 하도급계약은 외관만 존재할 뿐 실제로 체결되지 않았으므로 피고의 공사대금 수령에 법률상 원인이 없다고 보았음. 또한 피고가 위 직원에게 지급한 돈은 공사대금과 당사자·발생원인을 달리하는 별개 자금이어서 부당이득액에서 공제할 수 없고, 피고가 공사대금을 수령·처분한 이상 급부수령자로 평가하기 어려운 특수한 경우에 적용되는 실질적 이익 법리도 적용될 수 없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이 부분 원심을 파기·환송함(선택적으로 병합된 손해배상청구 부분도 함께 파기함)



**2026다205113 매매대금 (마) 파기환송**

**[증인의 위증을 이유로 매매대금 청구 확정판결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사건]**

**◇1.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7호에 규정된 '증인의 거짓 진술이 판결의 증거가 된 때'의 의미, 2. 거짓 진술을 제외한 나머지 증거들에 의하여도 동일한 내용의 판결이 선고되도록 사실인정이 될 수 있는 경우 위 조항의 재심사유에 해당하는지(소극)◇**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7호가 정한 재심사유인 '증인의 거짓 진술이 판결의 증거가 된 때'라 함은 증인의 거짓 진술이 판결 주문에 영향을 미치는 사실인정의 자료로 제공된 경우를 의미한다. 이 경우 판결 주문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만약 그 거짓 진술이 없었더라면 판결 주문이 달라질 수도 있었을 것이라는 개연성이 있는 경우를 말하고, 사실인정의 자료로 제공되었다는 것은 그 거짓 진술이 직접적인 증거가 된 때뿐만 아니라 대비증거로 사용되어 간접적으로 영향을 준 경우도 포함되지만 어디까지나 증거로 채택되어 판결서에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를 말한다. 한편, 그 거짓 진술을 제외한 나머지 증거들에 의하여도 동일한 내용의 판결이 선고되도록 사실인정이 될 수 있는 경우에는 비록 그 거짓 진술이 위증으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았다 하더라도 위 조항의 재심사유에는 해당되지 않는다(대법원 1997. 12. 26. 선고 97다42922 판결 등 참조).

☞ 원고(재심원고, 이하 '원고')는 피고(재심피고, 이하 '피고')를 상대로 아파트를 3억 7,500만 원에 매도하였다고 주장하며 매매대금 잔금 9,500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가 패소판결이 확정되었는데, 이후 제1심 증인인 피고의 모친이 '관련 형사사건 경찰 조사과정에서 등기·세금 관련 서류를 제출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증언에 대하여 위증죄로 약식명령을 받아 확정되자, 원고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7호의 재심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며 재심의 소를 제기한 사안임

☞ 원심은, 제1심판결이 위증으로 확정된 증언을 포함한 증인의 증언 등을 근거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재심대상판결이 제1심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다는 점을 들어,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7호의 재심사유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음

☞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위증으로 확정된 증언은 '서류 제출 여부'에 관한 것으로서 재심대상판결이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면서 설시한 사정들(매매계약의 이행 경위, 매매대금 청구 여부, 원고의 자금조달 동기, 관련 형사사건의 처분결과)을 인정하는 자료로 제공되지 않았고, 설령 대비증거로 사용되었다 하더라도 나머지 증거들만으로 위 사정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어 재심대상판결의 주문에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보았음. 또한 증인의 증언 중 일부가 위증으로 확정되었다고 하여 그 증인의 증언이 인용된 판결에 곧바로 재심사유가 있다고 볼 수는 없고, 위증으로 확정된 진술 부분과 판결이유에 기재된 사실인정 사이의 대응관계가 구체적으로 확인되어야 하는데, 원심은 위증으로 확정된 증언이 재심대상판결의 사실인정에 어떻게 사용되었는지를 특정하여 판단하지 않았다고 지적하면서,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환송함

## 특 별

**2022두33811 법인세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소송 등 (나) 상고기각**

**[법인이 분식회계로 과다 납부한 세액의 감액경정 및 환급을 청구한 후 환급방법에 관한 법률조항이 개정된 경우 과세관청이 감액경정을 하면서 관련 부칙규정에 따라 개정 후 법률조항에 따른 환급방법을 적용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 등이 문제된 사건]**

**◇1. 처분 후의 사정에 의하여 권리와 이익의 침해 등이 해소된 경우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소극) 및 행정소송법 제13조 제1항에서 정한 '그 처분 등에 관계되는 권한이 다른 행정청에 승계된 때'의 의미, 2. 법인이 분식회계로 과다 납부한 세액의 감액경정 및 환급을 청구한 후 환급방법에 관한 법률조항이 개정된 경우 과세관청이 감액경정을 하면서 관련 부칙규정에 따라 개정 후 법률조항에 따른 환급방법을 적용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원칙적 적극), 3. 구 법인세법(2018. 12. 24. 법률 제166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2항에서 정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의 의미 및 그 비용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방법 및 사회질서에 위반하여 지출된 비용이 위 조항에서 정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비용'이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법인의 대표자 등의 주도로 분식회계가 이루어지고, 이를 기초로 한 성과급의 지급이 배임적인 것으로 평가되는 경우, 이러한 성과급은 사회질서를 위반하여 지출된 비용으로서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지 여부(적극), 4. 법인세법상 이자채권의 권리확정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



1. 가. 위법한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위법한 처분에 의하여 발생한 위법상태를 배제하여 원상으로 회복시키고, 그 처분으로 침해되거나 방해받은 권리와 이익을 보호·구제하고자 하는 소송이므로, 처분 후의 사정에 의하여 권리와 이익의 침해 등이 해소된 경우에는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대법원 2005. 5. 13. 선고 2004두4369 판결 등 참조).

나. 행정소송법 제13조 제1항은 "취소소송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 처분 등을 행한 행정청을 피고로 한다. 다만, 처분 등이 있은 뒤에 그 처분 등에 관계되는 권한이 다른 행정청에 승계된 때에는 이를 승계한 행정청을 피고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그 처분 등에 관계되는 권한이 다른 행정청에 승계된 때'라고 함은 처분 등이 있은 뒤에 행정기구의 개혁, 행정주체의 합병·분리 등에 의하여 처분청의 해당 권한이 타 행정청에 승계된 경우뿐만 아니라 처분 등의 상대방인 사인의 지위나 주소의 변경 등에 의하여 변경 전의 처분 등에 관한 행정청의 관할이 이전된 경우 등을 말한다(대법원 2000. 11. 14. 선고 99두5481 판결 참조).

법인세법 제9조 제1항, 제11조 제1항에서는, 내국법인의 법인세 납세지는 그 법인의 등기부에 따른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이고, 법인은 납세지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 후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세기본법 제43조 제1항, 제44조,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4조에서는, 과세표준신고서는 신고 당시 해당 국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결정은 그 처분 당시 해당 국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하되, 관할 세무서장 외의 세무서장에게 제출되는 과세표준신고서에 대해서는 관할 세무서를 밝혀 그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도록 하여야 하며, 이 경우 해당 과세표준신고서를 접수한 후 소관이 아님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그 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지체 없이 송부하고, 그 뜻을 적은 문서로 해당 납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가. 법인이 분식회계로 법인세를 과다하게 신고·납부하였다가 사후에 즉시 환급을 구하는 경우 이를 제한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는 과거 별도의 규정이 없었다.

그러다가 법인세법이 2003. 12. 30. 법률 제7005호로 개정되면서, 기업이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우량기업을 가장함으로써 주주·채권자 및 사회에 적지 않은 피해를 초래하고도 분식회계 후 세금을 그대로 환급받는 것을 제한하기 위한 조문이 신설되었다. 즉, 구 법인세법(2016. 12. 20. 법률 제143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개정 전 법인세법'이라고 한다) 제58조의3, 제66조 제2항 제4호, 제72조의2(이하 통칭하여 '개정 전 세액공

제환급 규정'이라고 한다)는,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분식회계로 과다 납부한 세액은 경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5년 동안 각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서 공제하고, 공제 후 남은 금액이 있으면 해당 환급금과 환급가산금을 즉시 지급하도록 규정하였다.

이후 분식회계에 대한 제재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 개정 전 세액공제환급 규정의 내용이 개정 후 법인세법 제58조의3(이하 '개정 후 세액공제환급 규정'이라고 하고, 개정 전 세액공제환급 규정과 통틀어 '개정 전후의 세액공제환급 규정'이라고 한다)으로 통합되면서(위 제66조 제2항 제4호, 제72조의2는 삭제됨), 개정 후 세액공제환급 규정이 정한 요건이 충족된 경우, 과다 납부한 세액은 그 100분의 20을 한도로 각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서 공제되고, 남은 금액은 이후 사업연도에 이월하여 공제되도록 하였다.

법인세법 부칙(2016. 12. 20.) 제1조 본문은 "이 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라고 규정하고, 부칙 제2조는 일반적 적용례에 관하여 "이 법은 이 법 시행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부칙 제5조는 "제58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이하 '이 사건 부칙규정'이라고 한다).

나. 이 사건 부칙규정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인한 경정에 따른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로서, 2017. 1. 1. 이후 과세관청이 경정하는 분부터 개정 후 세액공제환급 규정을 적용하도록 정하고 있다. 그리고 여기서의 '경정'은 납세자의 '경정청구'와는 구별되는 용어로서, 과세관청이 납세자의 경정청구를 받아 직권으로 행하는 '경정결정'이라는 점 역시 그 문언으로부터 도출된다.

이에 따라 분식회계로 법인세를 과다하게 신고·납부한 납세자인 법인이 개정 후 법인세법의 시행일인 2017. 1. 1. 이전에 개정 전 세액공제환급 규정에 따라 경정청구를 하였을지라도, 과세관청이 2017. 1. 1.이 도과한 이후에 경정결정을 하게 된 경우에는 과세관청이 정당한 이유 없이 처리를 지연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개정 후 세액공제환급 규정이 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그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행정처분은 그 근거 법령이 개정된 경우에도 경과규정에서 달리 정함이 없는 한 처분 당시 시행되는 개정 법령과 그에 정한 기준에 의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 개정 법령이 기존의 사실 또는 법률관계를 적용대상으로 하면서 국민의 재산권과 관련하여 종전보다 불리한 법률효과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도, 그러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가 개정 법령이 시행되기 이전에 이미 완성 또는 종결된 것이 아니라면 이를 헌법상 금지되는 소급입법에 의한 재산권 침해라고 할 수는 없다. 다만, 그러한 개정 법령의 적용과 관련하여서는



개정 전 법령의 존속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개정 법령의 적용에 관한 공익상의 요구보다 더 보호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그러한 국민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하여 그 적용이 제한될 여지가 있을 따름이다. 그리고 이러한 신뢰보호의 원칙 위배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한편으로는 침해받은 이익의 보호가치, 침해의 중한 정도, 신뢰가 손상된 정도, 신뢰침해의 방법 등과 다른 한편으로는 개정 법령을 통해 실현하고자 하는 공익적 목적을 종합적으로 비교·형량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11. 16. 선고 2003두12899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8두9324 판결 등 참조).

2) 개정 후 세액공제환급 규정은 분식회계에 대한 제재를 한층 강화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이 사건 부칙규정은 개정 후 법인세법의 시행 전에 과세관청이 경정청구를 인용하는 감액경정을 함으로써 이미 성립한 납세자의 환급청구권에 대해 소급하여 개정 후 세액공제환급 규정을 적용하도록 한 것이 아니라, 개정 후 법인세법의 시행 후에 이루어진 과세관청의 감액경정에 따른 환급청구권에 한하여 개정 후 세액공제환급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경정청구가 개정 전 법인세법이 시행될 당시에 있었더라도 과세관청의 경정결정 당시의 개정 후 세액공제환급 규정을 적용한다고 하여 이를 소급입법이라 할 수는 없다.

3) 기업의 재무상태에 관한 정보를 허위로 제공함으로써 거래상대방의 의사결정을 왜곡시키고 더 나아가 투자자와 채권자 등을 기망하여 시장의 신뢰기반을 훼손하는 행위인 분식회계의 경우, 이를 저지른 납세자가 통상의 경정청구와 마찬가지로 아무런 제약 없이 분식회계 후 세금을 돌려받는 것은 사회적으로 쉽게 용인되기 어렵다. 개정 전 세액공제환급 규정 역시 분식회계에 대해 세제상 불이익을 주기 위한 조항으로서 위 규정이 이미 도입된 것 자체만으로 분식회계를 저지른 자에 대해 조세법적 측면에서 모종의 제약이 따르리라는 점이 납세자에게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진 것으로 볼 수 있기도 하다. 따라서 분식회계를 저지른 납세자로서는 경정청구 당시 자신에게 상대적으로 유리한 내용의 개정 전 세액공제환급 규정이 과세관청의 향후 경정결정 시점까지 그대로 존속되리라고 기대하거나 신뢰할 수는 없고, 그러한 기대나 신뢰가 개정 후 세액공제환급 규정의 적용에 관한 공익상 요구보다 더 보호가치가 있다고 하기도 어렵다.

4) 나아가 개정 후 세액공제환급 규정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과다하게 계상한 것에 대하여 납세자가 경정을 청구하여 경정을 받은 경우'로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과다하게 계상하게 된 이유가 '수익 또는 자산을 과다 계상하거나 손비 또는 부채를 과소 계상한 것', 즉 분식회계에 기인하고(개정 후 법인세법 제58조의3 제1항 제1호), 이러한 분식회계에 관하여 금융당국의 제재조치를 받을 것(같은 항 제2호)의 두 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한다. 이는 조문 위치 등이 달라졌을 뿐 개정 전 세액공제환급 규정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이처럼 개정 전후의 세액공제환급 규정에서, 환급의 원인이 된 감액경정이 분식회계로 인해 이루어질 것을 요하면서, 더 나아가 금융당국의 제재조치를 받을 것을 명시적인 요건으로 정한 것은, 과세관청이 경정결정을 하는 시점에 이르러 금융당국의 제재조치를 분식회계 유무의 판단 기준으로 삼기 위해서라고 봄이 타당하다. 즉, '금융당국의 제재조치'라는 요건은 '납세자의 경정청구'를 금융당국의 제재조치가 있은 뒤의 것으로 시간적으로 한정함으로써 개정 전후의 세액공제환급 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 범위를 제한하기 위한 취지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금융당국의 제재조치는 과세관청이 경정결정을 하는 시점까지 있으면 족한 것이지, 개정 전후의 세액공제환급 규정이 적용되기 위해 금융당국의 제재조치가 납세자가 경정청구를 하기 이전에 이루어질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다.

5) 개정 전후의 세액공제환급 규정은 물론 이 사건 부칙규정에서의 각 '경정'은 과세관청이 경정청구에 따라 실제 행하는 경정결정을 의미한다. 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3항 단서는 경정청구를 한 자가 경정청구 이후 2개월 이내에 아무런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 그 2개월이 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위 단서 규정에 따라 간주되는 과세관청의 거부처분은 여기서의 '경정'에 해당하지 않는다. 개정 전후의 세액공제환급 규정 및 이 사건 부칙규정에서의 각 '경정'이 경정청구 이후 2개월이 경과하기 전에 이루어진 것으로 제한된다고도 볼 수 없다.

3. 구 법인세법(2018. 12. 24. 법률 제166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9조는 제1항에서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損費)의 금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2항에서 "제1항에 따른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말하는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비용'이라 함은 납세의무자와 같은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는 다른 법인도 동일한 상황 아래에서는 지출하였을 것으로 인정되는 비용을 의미한다. 그러한 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지출의 경위와 목적, 형태, 액수,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회질서에 위반하여 지출된 비용은 여기에서 제외되며, 수익과 직접 관련된 비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7두51310 판결 등 참조).



법인의 대표자나 해당 법인을 실질적으로 경영하면서 사실상 대표하고 있는 자가 분식회계를 통해 해당 법인의 경영성과를 부풀린 다음 이를 토대로 일정 수준의 목표달성을 전제로 하는 성과급을 임직원 등에게 지급하는 경우, 이러한 성과급은 그 지급이 배임적인 것으로 평가되는 한 사회질서에 위반하여 지출된 비용으로서 구 법인세법 제19조 제2항에서 말하는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비용이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비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26. 8. 12. 선고 2022두42020 판결 참조).

4. 법인세법 제40조 제1항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때 익금 확정이란 과세대상 소득이 실현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되었음을 의미한다. 법인세법에서는 소득세법상 이자소득과는 달리 채무자의 무자력으로 인한 회수불능의 채권을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을 계산할 때 대손금으로 익금에서 공제되는 손금에 산입하게 되어 있다. 이를 고려하면, 법인세법상 이자채권으로 인한 소득의 확정은 그 실현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되었는지의 여부에 따르는 것이 타당하고, 채무자의 자산 부족으로 이자채권이 현실적으로 변제될 가능성이 없다는 사정은,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때에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는 사유가 될 뿐이다(대법원 2005. 5. 26. 선고 2003두797 판결 등 참조).

☞ 원고(조선업체)는 분식회계를 통하여 영업이익이 적자인데도 흑자인 것처럼 꾸며오다가, 분식회계가 발각되자 재무제표를 정정공시한 다음 당시 관할 세무서장인 피고 A 세무서장에게 분식회계로 법인세 과세표준·세액이 과다 신고·납부되었다는 이유로 2013·2014 사업연도 법인세 등에 대한 감액경정 및 환급청구를 하였고, 피고 A 세무서장이 경정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통지하지 않자 간주 거부처분에 대하여 불복을 제기하였음. 이후 분식회계로 과다 납부한 세액의 환급방법에 관하여, 개정 전 세액공제환급 규정(5년간 세액공제 후 환급)이 개정 후 세액공제환급 규정(기간 제한 없이 세액공제만 허용)으로 개정되었는데, 원고의 본점 이전 후의 관할 세무서장인 피고 B 세무서장은 ① 분식회계로 성과급 지급 조건을 충족한 것처럼 꾸며 임직원들에게 지급한 성과상여금 손금불산입, ② 경영난을 겪는 선주사들에 상환 기간을 유예해주면서 받기로 약정하고도 익금에 산입하지 않은 미수이자 익금산입, ③ 아랍에미리트 소재 회사에 지급한 컨설팅 자문료 손금불산입, ④ 자회사에 지급한 비교적 고가의 설계용역비 부당행위계산 부인 후 손금불산입, ⑤ 퇴직 임원 등을 고문으로 선임한 후 지급한 고문료 손금불산입 등을 하여 원고의 경정청구 중 일부를 거부하고 원고의 2013·2014 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

준 및 세액을 일부 감액경정하면서, 감액된 세액의 환급에 관하여 개정 후 세액공제환급 규정에 따라 세액공제 방식을 적용하였음. 한편, 피고 A세무서장은 원고가 사내협력사에 지원금으로 지급하여 매입세액 공제받았던 금액 및 원고 소속 직원이 자금 착복 과정에서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매입세액 공제받았던 금액을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2012년 1기~2015년 2기 각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사안임

☞ 원심은 쟁점별로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음

- (1) 원고가 본점 이전 전 관할 세무서장을 상대로 경정청구의 간주 거부처분에 대한 불복을 제기하였는데, 본점 이전 후 관할 세무서장이 경정청구를 일부 거부하는 처분을 명시적으로 한 경우, 원고가 본점 이전 전 관할 세무서장을 상대로 간주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권리보호이익 및 피고적격 흠결로 부적법함

- (2) 원고가 분식회계로 과다 납부한 세액의 감액경정 및 환급을 청구한 후 환급방법에 관한 법률조항이 개정된 경우 과세관청이 감액경정을 하면서 관련 부칙규정에 따라 개정 후 법률조항에 따른 환급방법을 적용한 것은 적법함

- (3) '① 분식회계에 기초한 성과상여금'은 사회질서를 위반하여 지출된 것으로서 손금에 해당하지 않고, '② 상환유예약정에 따른 이자수익'은 약정 지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실현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확정되었다고 볼 수 있어 위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되어야 하며, '⑤ 퇴직 임원 등에게 지급한 고문료'에 관하여 세무조사결과통지 당시 소득구분이 '상여'로 기재되었다 하더라도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고, 고문들이 구체적으로 수행한 업무 활동 내용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서 고문료가 손금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 B 세무서장의 처분 중 성과상여금, 이자수익, 고문료에 관한 부분은 적법하지만, '③ 아랍에미리트 소재 회사에 지급한 컨설팅 자문료'는 선박 수주 과정에서 사업상 필요에 따라 지출한 것으로서 손비 요건을 충족하고, '④ 자회사에 지급한 설계용역비'는 피고 B 세무서장이 비교 대상으로 삼은 거래단가가 '시가'에 해당한다거나 설계용역비의 지급에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보아 피고 B 세무서장의 처분 중 컨설팅 자문료, 설계용역비 관련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함

- (4) 원고가 사내협력사들에 지급한 지원금이 사내협력사들로부터 제공받은 용역과 대가관계가 인정되어 매입세액 공제의 대상이 되고, 원고 소속 직원이 자금 착복 과정에서 원고 매입처로부터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음으로써 원고가 공제받은 매입세액에 관하여 원고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것으로 볼 수 없어 10년의 장기부과제척기간과 부당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될 수 없음



☞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원심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함

**2026두31120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나) 상고기각**

**[국가별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국가'의 의미가 문제된 사건]**

**◇구 법인세법 시행령(2020. 2. 11. 대통령령 제303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 제94조 제7항에서의 '국가'는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조세에 관하여 별도의 법제와 관할권을 가진 정부 또는 그 권한이 미치는 지역을 포함하는 개념인지(적극)◇**

1. 구 법인세법(2019. 12. 31. 법률 제168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7조 제1항 제1호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에 국외원천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로서 그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법인세액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의 산출세액에 국외원천소득이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외국법인세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산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구 법인세법 제57조 제7항의 위임에 따른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 제7항은 "법 제57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공제한도금액을 계산할 때 국외사업장이 2 이상의 국가에 있는 경우에는 국가별로 구분하여 이를 계산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앞서 본 규정의 문언과 체계,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 제7항에서의 '국가'는 비록 독립된 주권국가는 아닐지라도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조세에 관하여 별도의 법제와 관할권을 가진 정부 또는 그 권한이 미치는 지역을 포함하는 개념이라고 보아야 한다.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가. 법은 불특정 다수인에 대하여 동일한 구속력이 있는 사회의 보편타당한 규범이므로 이를 해석함에 있어서는, 가능한 한 법률에 규정된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법률의 입법 취지와 목적, 그 제·개정 연혁, 법질서 전체와의 조화, 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는 체계적·논리적 해석 방법을 추가적으로 동원함으로써, 법해석의 요청에 부응하는 타당한 해석을 하여야 한다(대법원 2022. 10. 27. 선고 2022두44354 판결 등 참조).

비록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 제7항의 '국가'에 대해 법인세법령 내에 별도의 정의규정은 없지만, 국가 간 이중과세 방지 등을 목적으로 하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7호의 정의규정에서 조세조약의 체결당사자인 '국가'에 '고유한 세법이 적용되는 지역'을 포함시키고 있다. 뿐만 아니라 구 법인세법 제57조 제1항의 위임에 따라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 제1항이 '외국법인세액'을 '외국정부(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

다)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비추어 보면, '국가'라는 용어는 '독립된 주권국가인 외국'으로 엄격히 제한 해석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사용된 개별 법령과 조문의 내용 및 목적, 취지에 따라 서로 다른 의미를 가질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나. 구 법인세법 제57조 제1항 제1호는 국제적인 이중과세를 조정하기 위하여 외국법인세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다만 그 공제한도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 국외원천소득이 해당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정함으로써,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우리나라에 납부하여야 할 법인세액의 범위 내에서만 외국법인세액의 공제를 허용하고 있다. 이는 국외원천소득이 발생한 원천지국에서 우리나라보다 높은 법인세율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 그에 따른 외국법인세액을 전부 공제할 수 있도록 허용하게 되면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 납부하여야 할 법인세의 일부로 외국법인세액을 납부하도록 하는 결과가 되므로 이를 막기 위함이다(대법원 2026. 6. 25. 선고 2026두30340 판결 등 참조).

나아가 위와 같은 취지를 유지·관철하기 위해서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 제7항은 국외사업장이 둘 이상의 국가에 있는 경우 공제한도금액을 계산하는 방법을 정하고 있다. 입법연혁적으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 제7항이 2015. 2. 3. 대통령령 제26068호로 개정되기 전까지는, 국외사업장이 둘 이상의 국가에 있는 경우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금액을 국가별로 구분하지 않고 일괄하여 계산하는 '일괄 한도 방식'과 국가별로 구분하여 계산하는 '국가별 한도 방식' 중 어느 하나를 납세의무자가 선택할 수 있었는데, 위 개정 이후로는 후자만이 가능하게 되었다. 이는 저세율국을 활용하여 과도하게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었다.

다. 위와 같이 우리나라가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 전면적으로 과세권을 행사하면서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는 보충적 과세권을 행사하고, 나아가 국제적 이중과세의 조정과 더불어 외국납부세액의 공제로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과세권이 잠식되지 않아야 한다는 외국납부세액 공제제도의 기본 전제 및 국외사업장이 둘 이상의 국가에 있는 경우 외국납부세액 공제가 과도하게 이루어지지 않도록 국가별 한도 방식이 단일하게 적용되도록 변천되어 온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 제7항의 '국가'는, 국제법상 독립된 주권국가로서의 지위 유무와 별개로,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우리나라 정부(과세관청) 이외에 과세권을 행사할 수 있고 나아가 조세에 관하여 별도의 법제와 관할권을 가진 정부 또는 그 권한이 미치는 지역을 포함하는 의미로 보아야 한다.

☞ 원고는 미국의 하와이, 캘리포니아, 뉴욕 및 미국령인 괌 등에 국외사업장을 둔 내국



법인으로서, 국내에서 2015~2019 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납부하는 과정에서 미국 연방정부에 납부한 세액과 괌 정부 및 북마리아나 제도 정부에 납부한 세액을 구분하여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금액을 계산한 후, 각 세액을 해당 사업연도 법인세액에서 공제받았는데, 그 후 원고는 미국과 괌, 북마리아나 제도가 하나의 국가로서 각 정부에 납부한 세액을 구분하지 않고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금액을 계산하여야 한다며, 피고에게 초과 납부한 법인세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가 미국과 괌, 북마리아나 제도를 별개의 국가로 보아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금액을 계산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하자, 원고가 위 거부처분의 취소를 청구한 사안임

☞ 원심은, 괌과 북마리아나 제도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과세권은 괌 정부 및 북마리아나 제도 정부에 부여되어 있어, 이들 정부는 50개 주와 콜롬비아 특별구를 관할하는 미국 정부와 별개의 독자적 과세권을 행사하는 주체이고, 이에 따라 국가별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괌과 북마리아나 제도는 미국에 포함되지 않는 별개의 원천지국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음

☞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원심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함

**2026두31230 종합소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청구 (마) 상고기각**

**[분할합병에 따른 의제배당소득을 산정할 때 분할법인 주식의 취득가액을 안분하는 기준이 문제된 사건]**

**◇인적분할에 따른 의제배당소득을 산정할 때 분할대가에서 차감할 '분할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분할등기일 또는 분할합병등기일 현재의 자기자본 또는 순자산 감소 비율에 따라 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1. 구 소득세법(2022. 12. 31. 법률 제191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7조 제1항은 배당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제1호), '의제배당'(제3호) 등을 들고 있다. 의제배당을 배당소득으로 보는 취지는, 기업경영의 성과인 잉여금 중 사내에 유보된 이익이 주주나 출자자에게 환원되어 귀속되는 경우 실질적으로 현금배당과 유사한 경제적 이익에 해당하므로 과세형평의 원칙상 이를 배당으로 의제하여 과세하는 데에 있다(대법원 1991. 9. 10. 선고 91다10565 판결, 대법원 1992. 2. 28. 선고 90누2154 판결 등 참조).

2. 구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은 그 각 호에서 의제배당의 종류를 열거하고 있는데, 제6호는 그 중 하나로 "법인이 분할하는 경우 분할되는 법인(이하 '분할법인'이라 한다)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의 주주가 분할로 설립되는 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으로부터 분할로 취득하는 주식의 가액과 금전, 그 밖의 재산가액의 합계액(이하 '분할대가'라 한다)이 그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의 주식(분할법인이 존속하는 경우에는 소각 등으로 감소된 주식에 한정한다)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규정하고 있다.

나아가 구 소득세법 제39조 제6항의 위임에 따라 배당소득의 수입시기를 정하고 있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2024. 12. 31. 대통령령 제351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6조 제5호 (다)목은, 구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6호의 의제배당소득의 수입시기를 '법인이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소멸 또는 존속하는 경우에는 그 분할등기 또는 분할합병등기를 한 날'로 정하고 있다.

3. 앞서 본 규정들의 문언 내용과 그 취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인적분할이 이루어진 경우 분할법인 주주의 의제배당소득을 산정함에 있어 분할대가에서 차감할 '분할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은, 분할등기일 또는 분할합병등기일 현재를 기준으로 감소한 분할법인의 자기자본 또는 순자산(자본금과 잉여금의 합계액 중 분할로 인하여 감소되는 금액)이 분할 전 분할법인의 자기자본 또는 순자산(자본금과 잉여금의 합계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위 주주가 해당 분할법인의 주식을 취득하는 데 사용한 총 금액에 곱하는 방식으로 산출하여야 한다.

☞ A사(분할법인)의 투자사업 부문이 분할되어 B사(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에 흡수합병됨에 따라 A사의 주주인 원고가 B사의 분할신주를 교부받았음. 이 과정에서 A사 주식의 취득가액에 분할합병등기일 기준 자기자본비율을 곱한 금액을 분할대가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원고의 의제배당액이 산정되었고, 원고는 이를 종합소득에 포함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음. 이후 원고는 분할합병계약에서 정한 분할비율을 적용하여 취득가액을 안분하여야 한다며 종합소득세 경정을 청구하였으나, 피고가 이를 거부하였고, 원고가 그 취소를 구하였음. 본건은 원고가 분할신주를 교부받음으로써 얻은 의제배당소득을 계산할 때 공제해야 하는 A사 주식의 취득가액을 어떻게 안분하여야 하는지 문제된 사안임

☞ 원심은, 분할합병으로 인한 원고의 의제배당소득을 산정할 때 '분할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은 분할합병등기일 현재의 자기자본비율(분할합병으로 감소한 분할법인의 자기자본 ÷ 분할합병 전 분할법인의 자기자본)에 따라 계산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음

☞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원심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함